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가단1208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중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정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2015. 6. 17. 증여계약을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3.경 인천 계양구 F 외 1필지 지상 기존 G연립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G연립재건축주택조합과 위 토지상의 H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여 2015년경에도 이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나. 1) 소외 회사는 2015. 5. 22.경 I과 사이에, 위 H아파트 J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I으로부터 위 분양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소외 회사와 I은 위 분양계약 당시 만약 소외 회사가 2015. 10. 31.까지 I을 위 아파트에 입주시킬 수 없을 때에는 I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은 위 분양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위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I에 대한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C은 위 분양계약 무렵 소외 회사의 이사였다.

2) I은 소외 회사의 위 분양계약 위반으로 2015. 10. 31.까지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나 C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반환받지도 못하자,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소외 회사의 I에 대한 위 5,000만 원 반환 및 위약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2017. 2. 16.경 청구금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3.경 5,500만 원을 가압류집행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위 공탁금은 위 분양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I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1) 한편, 피고는 2015. 6. 17. 서울 도봉구 K아파트 제18층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C은 2015. 6. 17.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한편,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에게 증여한 위 5,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H아파트를 분양받은 I 등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M과 C 등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M과 C은 'I 등에게 위 H아파트 등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을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356, 2017고단4063(병합), 2018고단1837(병합)], 위 형사소송에서 2019. 4. 19. M과 C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M과 C이 항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534, 1106(병합), 1257(병합)],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6. M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고,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6.경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등으로 원고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G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H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759), 위 법원은 2013. 11. 29. 위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기성공사금액은 17,197,974,000원이나, 위 돈에서 기지급한 분담금, 지체상금,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은 채무 등을 공제하면 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합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되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M과 이사 C 등이 이를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피고에게 증여한 위 5,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위 분양계약 당시 이미

I에게 위 H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외 회사의 이사인 C은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I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몇 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의 위 분양계약 위반으로 I에 대한 위 5,000만 원 반 등 채무와 원고의 그 연대보증 채무 발생,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 실제로 I이 위 분양계약 체결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15. 10.경 이후에 소외 회사의 위 분양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외 회사와 C, 원고 등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의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하다가 2017. 2.경 원고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의 해방공탁금으로 5,5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후 위 공탁금으로 원고의 I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가 C에 대하여 2,500만 원 이상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2015. 6.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할 당시 I의 소외 회사, C 및 원고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분양대금반환채권 등과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들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들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무초과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8. 현재 무자력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행순